

# 금정면 종합감사 결과

I.

## 감사개요

#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·개선�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-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·누락·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

### 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금정면
- 감사기간 : 2018. 10. 08. ~ 2018. 10. 12. (4일간)/한글날(10.9) 제외
- 대상기간 : 2016. 05. 24. ~ 2018. 10. 07. 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6인

### 3. 감사중점사항

- 공사·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
- 기획, 총무행정, 문화·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
- 농정업무,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
-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
-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
-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
-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

#### 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요 위반사항
일반행정 분야	기간제(단시간) 근로자 등 고용 · 산재보험 미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등을 하면서 단기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고용 ·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위험 (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수거)에 따른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~ 2017년까지 총 53명에 대해 고용 ·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】</p>
세출분야	사무관리비(201-01)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위와 같이 화장실 및 사무실용 소모성 물품 등 6건은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(203-04)에서 집행하여야 하고, 민원인 및 손님접대용 음료 구입 1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(203-01)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(201-01)에서 집행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9호)】</p>
	이장 위 · 해촉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2018년 이장의 임기종 위 · 해촉시에 수당을 해촉이장에게 일할 계산 하여 6,450원을 과다지급하고, 신규 위촉된 이장에게 이장수당 77,4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】</p>
	수입인지 미징구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2016년,2018년 공사 3건에 대해 수입인지 60,000원을 미징구하였고,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공사 1건에 대해 105,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징구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,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, 같은법 시행령 제2조 3항,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항 및 제10조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세무분야	주민세(재산분) 과세자료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·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미신고 납부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(재산분) 3건 1,711,9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. 【재무과-18006(2017.7.7.)호, 17356(2018.7.3.)】</li> </ul>
	취득세(이륜차) 과세자료 누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『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,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·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,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6건 291,360원이 누락 된 사실이 있음. 【지방세법 제20조】</li> </ul>
사회복지 분야	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철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일지에 따르면 계획 당시 사업장소인 금정면 일원과는 달리 실제 사업 장소는 면 청사 내·외로 한정하고 있고 작업일지 자재 수불부에 자재 사용품목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.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 및 “2018년 자활사업 안내”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사회복지 분야	금정면 공영목욕장 운영위원회 개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·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에서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, 이용대상자 제한, 입장거절 및 제한, 수익금 집행계획을 관리·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, 금정면에서는 수감기간에 해당되는 2년(2017~2018년) 동안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.</li> </ul> <p>【영암군 공용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, 제16조】</p>
농업분야	2017년도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283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적격 농지(논)로 확인된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, 신청자 자격유무와 지급대상자 적격농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친환경농업과-647(2017.1.12.)호 및 -5635(2017.4.5.)호】</p>
	가축통계조사 실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 협동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, 조사자 마을 담당공무원 및 이장에게 조사결과를 취합 하지 않는 등 가축통계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 요령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건설도시 분야	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준공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『금정 다보마을 옹벽설치공사』를 준공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공사실명제 안내판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. 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,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161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.</li> </ul> <p>【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】</p>
	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상기 『금정 아천리 농로포장 공사』 외 4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,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,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】</p>
	환경관리비 정산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정면에서는 『금정 안기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』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하였으나,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내역을 미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.            따라서 빌주부서에는 준공 전 환경관리비 정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46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.</li> </ul> <p>【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】</p>